#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79호 )

# 심 사 보 고 서

1998. 6.

총 무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6. 10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6. 1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 2. 개정이유

○ 공영개발사업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'91.3.23 개정이후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함.

## 3. 주요골자

○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.(안 제17조)

## 4. 검토의견

○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"군수의 승인"을 "예산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결"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상위 법규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.

## 6. 토 론 : 없음.

## 7. 심사결과 :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